

1. 무료소송 지원

□ 운영개요

- (근거)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
- (비용지원) 변호사비용은 도가 부담, 인지대, 송달료 등은 지원대상자가 부담

※ 변호사 수임료 : 110만원(협정가*) 지원 / 인지대, 송달료, 감정비용 등은 본인 부담
* 지방변호사회와 협약한 협정가로 변호사 수임료 전액임(이하 같음)

- (대상) 저소득층, 사회적 약자,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

※ 민사, 형사, 가사 사건 등 소송 유형의 특별한 제한은 없음

-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도민 및 외국인주민 등
- (사회적 약자)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, 소년소녀가장, 요보호 아동 및 한부모 가정 등
- (국가 유공자) 참전유공자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등

※ 패소가 분명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

【기타 지원 제외 사유】

-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결정을 이미 받은 사건
-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사건
- 반사회적·반인륜적 범죄 등의 가해자
- 그 밖에 도지사가 소송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

□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기준

〈지원대상 중위소득 80%이하 가구소득 기준〉

(기준 : 2024년, 단위 : 원)

구분/가구	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중위소득 80% 이하		1,783,000	2,947,000	3,772,000	4,584,000	5,357,000	6,095,000
건강 보험	직장	-	104,866	134,671	163,987	191,507	217,374
	지역	-	38,455	80,190	118,770	140,849	170,355
	혼합	-	105,889	135,906	165,995	194,124	220,815

2. 채무자대리인 및 개인회생·파산 지원

□ 운영개요

- (근거)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
- (지원대상) 무료소송 지원 대상자와 같음
- (지원내용) 변호사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불법 채권 추심 대응 및 개인회생·파산 신청 지원

□ 지원내용

- (채무자대리인) 변호사 수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 대응
 - 개인회생·파산신청으로 채무조정이 진행 중일 경우, 1회 연장 가능
 - ※ 변호사 수임료 : 30만원 지원(협정가) / 우편 비용 등은 본인 부담
 -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빚 독촉할 수 없음(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8조의2)
- (개인회생·파산) 필요한 서류 작성·신청하여 법원의 결정 시 까지 지원
 - 개인회생 : 고정수입 있는 者, 채무액의 30~40%를 5년간 상환, 인가까지 3-4월 소요
 - 개인파산 : 채무상환 능력 없는 者(노동력 상실·무재산 등), 결정까지 7~9개월 소요
 - ※ 변호사 수임료 110만원(협정가), 인지대·송달료 등 기타 실비 전액 지원('23.4월~)

참고

시·군 접수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절차

(시·군) 시·군 담당자(법무, 사회복지, 주민센터 등) 지원 대상자 발견

※ 가정폭력, 이혼, 채무, 개인 파산 및 회생, 기타 민사, 형사, 가사상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층 주민



(시·군)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는 확인(붙임 3 구비서류 참조)



(시·군) 필요한 서류(신청서 및 자격 증명서류) 첨부하여 도 법무담당관 공문 신청



(도) 구비서류 확인 후 변호사 사전 무료 법률상담



(도) 특이사항 없을시 수임변호사 지정 및 결과통보(신청인 및 시·군)



(도) 수임료 등 지원 및 소송 수행